

서울대 농생대 『그린바이오』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 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3. 28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30(목) 제12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가. 강원도, 평창군, 서울대학교는 바이오 산업의 집적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, 바이오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"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"를 평창군 신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평창군 지원사업 및 사업비 분담 부분이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제6호·제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가. 사업계획

-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대에 89만 600평의 부지에 총 2,290억 4,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
- 주요시설은 연구관련, 산학관련, 재배관련, 사육관련, 행정지원관련 시설이 설치됨

나. 지원규모 및 재원대책

- 총사업비 2,290억 4,500만원중 서울대가 61%인 1,394억 3,400만원을 강원도가 26%인 596억 9,700만원을, 평창군이 13%인 299억 1,400만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며, 사업비가 증액 되어도 13%를 지원하기로 함
- 평창군의 지원규모는
 - 용지보상비 70억 9,000만원과, 건축공사비 129억원, 연구단지내 도로·상하수도·전기·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99억 2,400만원이며
- 재원대책은
 - 자체재원이 178억 2,400만원, 공유재산매각 교환이 70억 9,000만원, 지방채발행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음
- 지원방법은
 -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예산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임

4. 검토 의견

가. 긍정적인 측면으로는

-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등 조성함에 따라
 - 춘천, 홍천, 평창, 정선, 강릉을 잇는 바이오 벨트 구축
 - 서울대의 고급 연구인력의 상시 거주로 인적자원 확보 기여
 - 도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
 - 연구시설(건물)은 평창군 자산으로 추가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음
 - R/D사업은 초기 하드웨어 투자는 물론 지속적인 유지·관리 및 장비교체 등이 필수적이거나 이는 운영기관 부담
 - 서울대학교가 지닌 무형의 자산가치는 강원도 바이오 산업의 인식 제고 뿐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
 -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개발(R/D) 역량을 극대화 하여 산학협력을

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지역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고 사료됨

○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

-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
 - 생산유발효과 1,721억원, 임금유발효과 280억원, 부가가치 유발액 721억원, 고용유발효과 1,007명 등으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

나.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

○ 자원조달측면으로

- 사업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담할 자원은 총사업비의 13%인 299억 1,4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78억 2,400만원, 공유재산매각(교환)이 70억 9,000만원, 지방채발행으로 50억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균등 배분하면 연평균 74억 7,8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함.
- 자원별로 살펴보면, 자체자원 부담에 있어
 - 2006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특별회계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는 435억 533만원이나
 - 서울대 농생대 자체자원 부담금은 총 178억 2,400만원으로 이를 4년으로 나누어 산출하면 매년 44억 4,56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며
 - BTL사업, 한강수계와 관련된 마을 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,
 -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농업관련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.

○ 공유재산 매각(교환)은

- 편입 공유지 45필지 101,147평을 매각 및 교환을 통하여 지원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적으로 예산지원 및 공유재산 매각·교환이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음.

- 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, 평창군, 서울대, 도내대학이 참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통해 출연금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
-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21억 4,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나, 이에 대한 총당방법 및 매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- 지방채발행 50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평창군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규모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, 지방채발행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97억원까지 가능하나, 공유재산매각부분 같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과 상환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면

- 중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공정에 의거 연차적으로 준공된 후
 - 서울대 농생대가 향후 우리군으로 조기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실행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
 - 299억 1,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조성한 그린 바이오 단지가 지닌 무형의 자산가치가 향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임.
- 아울러 자체재원 조달로 인한 사회복지 및 농업관련 예산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의 축소로 인해
 - 주민들의 혜택이 경감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.
- 자원조달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, 지방채발행계획은 군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이들은 개별법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임.
-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개괄적, 총괄적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동의안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간 자원대책, 시행방법, 사후관리, 민원처리,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상시유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